집중수업 운영 규정

제정 2020. 8. 13.
제2차 개정 2024. 8. 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집중수업 운영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"집중수업"이란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하는 수업과 달리, 개별 교과목별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. (개정 2024.8.7.)
② "집중수업 과목"이란 집중수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.
③ 계절학기 및 현장실습 교과목은 집중수업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. (개정 2024.8.7.)

제3조(수업개설) ① 집중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(부)는 [별지 제1호 서식]을 작성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2.4.20., 2024.8.7.)
② 집중수업은 정규학기 중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. (개정 2024.8.7.)
③ 집중수업은 2~4학년 대상 전공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. 다만, 파견 교원의 경우 대상 학년 및 교양, 전공과목 구분 없이 집중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. (개정 2024.8.7.)

제4조(운영방법) ① 집중수업 과목의 담당 교원은 교과목이 추구하는 목표달성과 수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강의시간표를 편성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8.7.)
② 집중수업 과목의 담당 교원은 수업계획서에 집중수업 임을 안내하여 수강신청자의 수업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 (개정 2024.8.7.)
③ 집중수업 과목의 담당 교원은 수업계획서에 강의내용을 15주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8.7.)
④ 법정공휴일의 보강을 대학이 지정한 보강일에 시행할 수 없을 경우, 보강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4.8.7.)
⑤ 집중수업 운영 학과(부)는 집중수업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점검하여, [별지 제2호 서식] 및 [별지 제3호 서식]을 교무연구처에 제출한다. (개정 2022.4.20., 2024.8.7.)
⑥ 삭제 (2024.8.7.)
⑦ 삭제 (2024.8.7.)

제5조(강의시수 인정) 집중수업 과목 담당 교원의 강의시수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.

제6조(강의료 지급) 집중수업 과목의 강의료는 운영기간과 관계없이 15주를 기준으로 환산하

여 지급한다.

제7조(강의평가 및 성적평가) ① 강의평가 및 성적평가 방법은 제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. (개정 2024.8.7.)

② 강의평가 및 성적평가 기간은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을 따른다. (개정 2024.8.7.)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4.8.7.)

부칙 (기획예산팀-514, 2020.08.13.)

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678, 2024.08.07.)

이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삭제 2024.8.7.)

[별지 제1호 서식] (개정 2024.8.7.)

집중 수업 개설신청서

<table>
<tr><td>대학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학과(부)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학년</td><td rowspan="2">교과목명</td><td rowspan="2">학점</td><td colspan="2">시수</td><td rowspan="2">담당교수</td></tr>
<tr><td>이론</td><td>실습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개설 목적
(개설사유)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신청 내역</td><td colspan="2">시간</td><td colspan="3">기간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예) 9.18(월) 5~8교시</td><td colspan="3">예) 4주, 8주 12주 등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추진내용
및 방법</td><td colspan="5">붙임 : 일정표, 수업계획서</td></tr>
<tr><td>기대 효과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집중수업 운영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년도 학기 집중수업 교과목으로 위와 같이 개설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담당교원 : (인)
학 과 장 : (인)
학 장 : (인)
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붙임 : 1. 학과 회의록 1부.
2. 일정표 1부.
3. 수업계획서 1부.</td></tr>
</table>

[별지 제2호 서식] (개정 2024.8.7.)

집중수업 자체평가 보고서

1. 집중수업 총괄 현황

대학명		학과(부)			
학년	교과목명	학점	시수		담당교수
			이론	실습	
집중수업 기간	~	강의실		수강 학생 수	명

2. 집중수업 수업 내역(시간대별)

일자	시간	수업내용

3. 집중수업 자체 평가

1. 전체내용(수업계획서 상의 수업 목표와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)
2. 학생 만족도(학생들의 집중수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)
3. 건의사항
4. 기대효과(집중수업으로 진행했을 시의 장점 등을 포함)

담당교원 : (인)

학 과 장 : (인)

학 장 : (인)

붙임 : 1. 시간표 1부.

2. 집중수업 진행 사진 1부.

[별지 제3호 서식] (신설 2024.8.7.)

[종전 별표 1에서 이동 (2024.8.7.)]

집중수업 진행 사진

대학명		학과(부)			
학년	교과목명	학점	시수		담당교수
			이론	실습	

(월/일)	(월/일)
(월/일)	(월/일)
(월/일)	(월/일)
(월/일)	(월/일)

* 수업진행 사진 첨부